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병도 의원 발의 】

의안번호 371

I. 조례안 개요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 가.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찬성 21명)
- 나. 발 의 일 : 2019. 1. 31.
- 다. 회 부 일 : 2018. 2.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 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개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급증으로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모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시행 2016. 3. 24.] [서울특별시조례 제 6159호, 2016. 3. 24., 제정]」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음.
- 한편 1인 가구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신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공통점도 있지만¹⁾, 동시에 성별,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1인 가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임.

1) 황미진(2017.10),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4-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인가구 유형별 특성 반영 근거 마련

- 기본계획 수립 관련한 개정안(안 제7조제3항)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유사점 외에는 사실상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나 욕구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실태조사 규정 개정안(안 제9조제1항)은 실태조사의 목적을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 시행 주기를 현행 조례의 기본계획 규정(제7조제1항)²⁾에서 명시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맞춰 1인 가구 기본계획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안 실태조사에는(안 제9조제2항)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2)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등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과 계획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검토사항

- 1인 가구 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례(제10조제1항제1호~제8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1인 가구 복지 지원 사업 중 타조례를 인용하는 주거복지 사업(안 제10조제1항제1호)과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안 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인용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사유>

현행	개정안	사유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	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개정제명 반영 및 오인용 조번 수정 [시행 2016. 3. 24.] [서울특별시조례 제6192호, 2016. 3. 24., 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복지격차 해소 지원사업	2.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 지원사업	개정제명 반영 및 오인용 조번 수정 [시행 2016. 5. 19.] [조례 제6225호, 2016. 5. 19., 전부개정]

- 다만, 개정안(제10조제1항제2호)의 인용조례가 개정조례안 발의(2019. 1. 31.) 이후 전부개정³⁾된 바,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삭제로 인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도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판단됨.
- 다만, 인용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56호, 2019. 3. 28., 일부개정])